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성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신성범・이종욱・김종양

엄태영 · 김승수 · 임이자

조지연 • 박정하 • 조은희

구자근 · 김장겸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, 농촌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,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귀농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해오고 있음.

현행법에서도 귀농인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음.

하지만, 코로나 19펜데믹 여파 등으로 최근 귀농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지 등 취득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 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(안 제6 조 4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 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	제6조(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
한 감면) ① ~ ③ (생 략)	한 감면) ① ~ ③ (현행과 같
	<u></u> 이
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4
따라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	
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	
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	
농인(이하 이 항에서 "귀농인"	
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	
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(이	
하 이 항에서 "귀농일"이라 한	
다)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	
농지, 「농지법」 등 관계 법	
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	
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	
에 따른 농업용 시설(농지, 임	
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	
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	
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	
농지,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	
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취득세	
의 100분의 50을 <u>2024년 12월</u>	<u>2027년 12월</u>

<u>31일</u> 까지 경감한다. 다만, 귀농
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
취득세를 추징하되, 제3호 및
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
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
를 추정한다.

1. ~ 4. (생 략)

31일
<u>.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